

건설 현장 사고 사례

비계 사고 사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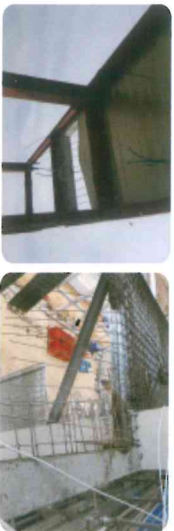
사고원인

- 비계별편의 과적 하중 관리 미흡
- 비계 해체 시 벽 이음재 사전 제거

사고방지 대책

- 구조검토 실시 및 시공상세도 작성
- 벽 이음재 해체 순서 준수
- 시스템비계 사용으로 구조안전 확보

데크플레이트 사고 사례



사고원인

- 콘크리트 편중타설에 의한 지지응력 초과
- 데크플레이트지지 불량으로 인한 콘크리트 타설 중 붕괴

사고방지 대책

- 구조검토 실시 및 시공상세도 작성
- 데크플레이트 양면 걸침 길이 및 지지력 확보
- 콘크리트 타설순서 준수

동바리 사고 사례



사고원인

- 동바리 안전성 검토 미흡
- 축압에 대한 보 거무집 안전성 검토 미흡
- 동바리 기둥 및 수평연결재 누락

사고방지 대책

- 구조검토 실시 및 시공상세도 작성
- 구조검토에 따른 동바리 간격 준수 등 설치 기준 준수

안전에는
베테랑이
없습니다



- | 건설공제조합 02)3449-8716
- | 전문건설공제조합 02)3284-2043
- | 안전보건공단 02)6711-2853 (서울)
- (울린사업) 031)259-7177 (경기)
- 051)520-0532 (부산)
- | 한국시설안전공단 1588-8788 (대표전화)

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가이드 라인



시스템비계 지원 사업 안내

정부, 「건설 추락사고 방지대책 발표
민간 20억 미만 현장, 시스템비계 사용시 금융비용 지원

국도교통부

- 대상**
- 20억원 미만 소규모 민간공사
 - '19년 4월 1일 정부대책 발표 이후 계약 체결된 공사

- 시행시기**
- '19년 5월부터 시행
 - ('19년 4월 1일 이후 계약분 소급 적용)

- 지원내용**
- **건설공제조합** (www.cgbest.co.kr)
시스템 비계 설치비용(인대) 초저리 무담보 특별융자
하도급대금지급 보증 수수료 할인
대표번호: 02-3449-8716
 - **전문건설공제조합** (www.jsctc.co.kr)
시스템 비계 구입비용 담보융자
계약: 선금보증 수수료 할인
대표번호: 02-3284-2043
 - **공동시행**
근로자채용 공제로 할인
일체형적업별반 대어대금 지급보증 ('19년 8월 1일 예정)

건설업 클리닝업

2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
최대 2,000만원까지 지원

고용노동부

- 클리닝업 보조대상 설비**
- 시스템비계, 수직·수평제 기사계, 안전난간, 작업발판 및 부속품 등 일체
 - 안전 방망, 클리닝제, 수직난출안, 초크방수막 (클리닝제 및 수직난출안은 시스템비계 설치 현장에 한하여 지원)
- 클리닝업 지원내용**
- 시스템비계 설치·설치·해체 안전방망 설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(9억미만 68%, 3억~9억미만 60%, 10억 이상 50%)
- 클리닝업 지원기준**
- 비계설치 면적별 일대기(건설현장 설치) (최장 300일까지 지원)
 - 동일법인 (안전성 지원확수 제한 (연초))
 - 기술지도 미기여 현장(9억원 이상) 지원 제한
 - * 신임안전보건법 제30조의2
- 클리닝업 대표번호**
- 서울: 02-671-0863 | 경기: 031-259-7177 | 부산: 051-520-0532

국영지원(국도교통부)과 국고지원(고용노동부) 동시 지원 불가

주의사항

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및 제출

관련근거

「건설기술진흥법」 제62조 (건설공사의 안전관리)

- 수립대상**
(「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」 제93조(제4항))
- 중·중대시설 및 중·중대시설물의 건설공사
 -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
 - 폭발물 사용으로 주변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(20m내 시설물 또는 100m 내 사용기(촉사)일)
 -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
 -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
 - 주택법, 제2조제2항다목에 따른 수직추출형 리모델링
 - 「건설기계관리법」 제3조의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(전용기(높이 100미터 이상) 황터 및 황합기, 터워크레인)
 - 「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」 제61조의2(제4항)의 기술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등
 - 높이 3미터 이상인 비계
 - 작업발판 일체형 가부집 높이 5미터 이상인 가부집 및 동바리
 - 타워의 지반공 또는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벽이 지반공
 -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기술구조물

벌칙 및 과태료

- **벌칙/징/인허가기판**
안전관리계획서 결과 미제출 (300만원 이하 과태료)
- **시공사**
안전관리계획 미수립 (2천이하정액 또는 2천만원)이하 벌금
안전점검 결과 미제출 (300만원이하 과태료)
기술구조물 구조적 안전성 미확인 (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)

건설사고 신고제도 안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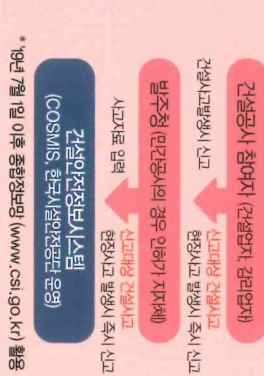
관련규정

「건설기술진흥법」 제67조 (건설공사 현장의 사고조사 등)

사고 대상

-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, 제67조의2 (건설사고의 범위)
-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의 인명피해
- 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

사고조사 절차



벌칙 및 과태료

- 건설공사 참여자 (발주자는 제외)
- 건설사고 미통보 (300만원 이하 과태료)

대표번호 : 055-771-4938

발주처 및 도급인의 의무

신체보험 의무 가입

- **대상** :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(이등락 건설업자 시공공사 (2천만원 미만), 상시근로자 인·미만 사업장 ('89년 7월부터))
- **목적** :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이유로 해고되거나 불이인한 처우를 한 사업주 (2천이하의 정액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)

안전관리 비용

- **근 거** : 「건설기술진흥법」 제63조
- **내 용** : 건설공사 계약에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미계상시
- **벌 칙** : 천만원 이하 벌금

건설공사 등의 사업안전 보전관리비 계상

- **근 거** :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72조
- **내 용** : 사업안전보전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미계상시
- **벌 칙** : 천만원 이하 벌금

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

- **근 거** :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69조
- **내 용** :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의 단축 행위시
- 공사에 지장위험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공법변경 행위시
- **벌 칙** : 천만원 이하 벌금

건설공사 기간의 연장

- **근 거** :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70조
- **내 용** : 발주처가 건설공사 도급인의 공사기간 연장 요청에 대해 합리적인 사유 없이 공사기간 미연장시
- **과태료** : 천만원 이하 과태료

설계변경의 요청

- **근 거** :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73조
- **내 용** : 요청받은 설계변경 내용이 기술적으로 명백하게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님에도 이를 설계변경에 미반영시
- **과태료** : 천만원 이하 과태료

- **근 거** :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73조
- **내 용** :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73조

- 건설공사 발주자의 신원제에 예방 조치**
- (1) 계획단계 : 중점 유해·위험 및 감소 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책 작성
 - (2) 설계단계 : 설계자에게 기본안전보건대책 확인 / 설계안전보건대책 확인
 - (3) 시공단계 : 시공자에게 설계안전보건대책 제공 / 시공안전보건대책 확인

• **과태료** : 위의 의무 위반시 천만원이하 과태료